

## 4 -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

- ▣ 지방자치단체별 본청·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

(단위 : m<sup>2</sup>, '23.12.31. 현재)

본청 청사			의회청사			단체장 집무실		
기준 면적	보유 면적	초과 면적	기준 면적	보유 면적	초과 면적	기준 면적	보유 면적	초과 면적
11,861	7,259	0	1,358	1,154	0	99	99	0

\* 근거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,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

우리군의 본청 청사 보유면적 7,259m<sup>2</sup>, 의회청사 1,154m<sup>2</sup>, 단체장 집무실 99m<sup>2</sup>로 모두 기준면적 범위 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